

조선시대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A Study on the Naesagi(內賜記) Description Form

송 일 기 (Song, Il-Gie)*

이 재 준 (Lee, Jae-Jun)**

◁ 목 차 ▷

- | | |
|------------|------------|
| 1. 緒 論 | 4. 記述類型 분석 |
| 2. 記述方式 분석 | 5. 結 論 |
| 3. 記述要素 분석 | <참고문헌> |

< 초 목 >

이 연구는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와 중요 기관에 하사한 서적인 內賜本の 표지 이면에 기재된 內賜記의 기술형식을 분석한 글이다. 내사기는 총 7가지 세부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頒賜日子’,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등의 요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는 내사본의 내사기 기술 형식을 분석한 것으로 내사기의 7가지 요소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밝히고, 조선시대에 가장 定例化으로 작성되었던 내사기의 표준 형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要語: 내사기, 내사본, 반사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ny415@naver.com)

접수일: 2009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8일

<ABSTRACT>

The Naesabon(內賜本), a book given by the king in the Joseon Period, has the Naesagi(內賜記) on the verso of its cover. The Naesagi has seven content elements including 'Date(頒賜日子)', 'Bestowal(內賜)', 'Grantee(受取者)', 'Book Title(書名)', 'Number of Items(頒賜件)', 'Granter(頒賜者)', and 'Command Not To Express Appreciation(命除謝恩)'. In this research, the descriptions form of the Naesagi on the Naesabon are analyzed in the following sequence: First, the seven content elements are examined in detail; Second, the features of each element are identified; and finally, a standard form of the Naesagi most regularly used in the Joseon Period is defined.

Key words: Naesagi, Naesabon, Bansa

1. 緒論

내사본이란 왕명으로 신료와 관청, 사교, 서원 등에 반사하는 책을 말하며, 반사할 때 서적의 표지 裏面에는 內賜記가 작성되어 있다. 내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서적의 ‘頒賜日子’, ‘內賜’, ‘受取者(處)’,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등 7요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책의 반사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내사기는 문서가 아닌 서적에 기록되지만 형식상으로는 일종의 고문서로 지칭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재 방식이나 유형이 흡사하며, 대개 공통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또는 작성 시기에 따라 다소 형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은 조선시대 내사본에 기록된 내사기의 기술 형식 및 세부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세부요소 중 3가지 이상의 형식을 갖춘 장서각 소장 내사본 120건을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를 기술방식, 기술요소, 기술유형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정형적으로 작성되었던 내사기 기술형식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20건 외에 축약형 내사기 등의 일부 기재 형식도 함께 다루어 보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래 내사기에 관한 연구는 白麟이 내사본의 반사제도와 함께 내사기의 작성 형식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內賜印인 『宣賜之記』와 조선후기와 말기에 사용되었던 『奎章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등 내사인으로 사용된 御寶의 규격과 사용 시기를 고찰하였다.¹⁾ 그 후 尹炳泰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사본의 반사제도와 날인되었던 어보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내사기 형식 중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用例를 들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사기의 書誌記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²⁾ 이어 그는 1997년에 보완 발표한 글에서 내사기의 각 요소인 반사일자, 수사자, 서명, 명제사은, 내사자 등을 세분하

1) 白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1969), 6-8.

2)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도서관학연구지』 8 (승의여전, 1983).

여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고,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내사기의 예외적인 형식을 추가하여 위조된 내사기를 포함한 내사본의 감별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다.³⁾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조사대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내사기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정형적인 기재 요소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는 내사본을 대상으로 그 중 비교적 정형적으로 기재된 120종을 선별하여 내사기의 기술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記述方式 분석

내사기는 일반적으로 4행에서 5행까지 改行하여 쓰여 지며, 기록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3행에서 끝나기도 한다. 대개 1행에는 ‘頒賜日子(頒賜年月日)’, 2행에는 ‘內賜’, ‘受取者(處)’, ‘書名’, ‘頒賜件’의 순서로 쓰여 진다. 2행의 4가지 요소를 한 줄에 모두 기록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內賜’와 ‘受取者(處)’는 2행에 작성되고 ‘書名’과 ‘頒賜件’은 3행에 작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4행에는 ‘命除謝恩’의 ‘命除謝’까지만 작성하고 5행에는 4행의 ‘命’과 段을 같이 하여 ‘恩’을 쓴다. 그리고 5행의 하단 또는 6행의 하단에 ‘頒賜者’의 ‘職銜’, ‘姓’, ‘手決’을 작성한다. 2행의 ‘內賜’는 1행 ‘頒賜日子’의 年號보다 一段 또는 二段 높게 시작하고, 4행의 ‘命’과 5행의 ‘恩’ 역시 같은 방법으로 一段 또는 二段 높게 쓰여 진다.

內賜記의 각종 요소들은 기록할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행하는 등 자유스럽게 작성하는 것에 반하여 1행의 ‘頒賜日子’와 4행의 ‘命除謝恩’, 5행의 ‘頒賜者’가 기재되는 부분의 형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頒賜日子’는 조선후기까지 예외 없이 표지 裏面의 가장 오른쪽 1행에 작성되었다. 年號를 포함한 年, 月, 日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통 한 행을 모두 ‘頒賜日子’를 표기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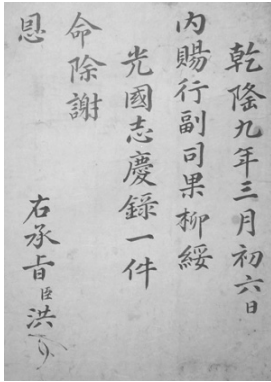
3) 尹炳泰, “內賜記이야기 古書 4,” 『한국고서협회』(1997).

조선후기까지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만 관례를 벗어나, 1행에도 ‘頒賜日子’ 이외에 다른 기록이 쓰여 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었다. 분석한 120건 중 이러한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10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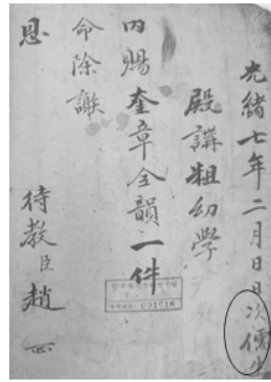
<表 1> 內賜記의 套式 변화

頒賜時期	書名	受取者(處)
1850(哲宗 01)	兩陵誌狀續編	原任提學
1854(哲宗 05)	朱書百選	幼學
1866(高宗 03)	御定奎章全韻	幼學
1870(高宗 07)	朱書百選	幼學
1871(高宗 08)	弘文館志	檢校典翰
1879(高宗 16)	御定奎章全韻	幼學
1881(高宗 18)	御定奎章全韻	幼學
1891(高宗 28)	离院條例	檢校弼善
1892(高宗 29)	御定奎章全韻	幼學
1901(高宗 38)	璿源系譜記略	量地衙門摠裁

모두 조선 말기에 변화된 기록양식으로 대부분 규장각의 吏屬이 필사하고 각신이 수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0건 중 8건이 고종시기에 반사되었고, 6건의 受取者가 幼學이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筆寫體의 특징은 여백의 균형이 없으며, 이미 쓴 글자위에 再筆寫 하는 등 글씨가 복잡하고 단정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1794年(正祖 18)에 간행된 『朱書百選』과 1797年(正祖 21)에 新刊한 『奎章全韻』은 조선후기에 들어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상품으로 반사한 예가 많았다. 시험 후에는 서적의 시장인원이 결정된 다음날 반사가 이루어지므로, 대량의 반사서적에 내사기를 속히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조선말기의 몇 건을 제외하고는 1행에 ‘頒賜日子’만 기록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다음의 <寫眞 1>은 기본 형태의 내사기와 1행에 ‘頒賜日子’ 이외의 기록이 작성된 내사기의 예시이다.



『光國志慶錄』, 1744年(英祖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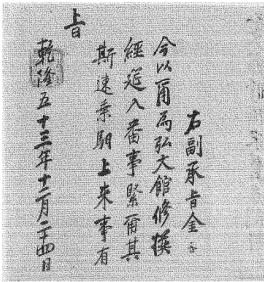


『奎章全韻』, 1881年(高宗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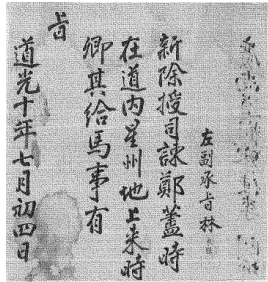
<寫眞 1> 內賜記의 記述 方式 實例

이렇게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작성되는 내사기는 일종의 고문서이다. 주체인 發給者와 대상인 受取者 사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는 글을 ‘문서’라 하고, 문서로서 옛것을 ‘고문서’라 한다. 文書라는 용어는 예로부터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경우에 따라서 書冊·書籍을 뜻하기도 했고, 형률관계의 書類, 推案·鞫案 등 재판관계의 서류를 의미하기도 했으며, 記簿·帳簿 등을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官文書·公文書·事大文書·交隣文書 등 官府와 官府, 國家와 國家 간에 來往, 發受하는 글을 문서라고 통칭해 왔다. 따라서 古文書라 함은 官府나 國家, 私人 사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는 글을 모두 문서라고 통칭할 수 있으며 敎書, 有旨, 關文, 甘結, 牒呈, 敎旨 등이 그 예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행정문서들이 관청에서 관료들에 의해 수없이 양산되었다. 그 중 내사기와 형식상 가장 유사한 有旨를 살펴보자. 有旨는 승정원의 담당승지를 통하여 명령을 받는 이에게 전달되는 王命書를 말한다. 敎書 등은 대개 文臣이 製進하여 왕의 열람 또는 청문을 거쳐 瑕疵가 없으면, 이를 書寫하고 寶印을 찍은 다음 송부하는 것이지만, 有旨는 담당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을 쓰고 수결한 다음 명령을 받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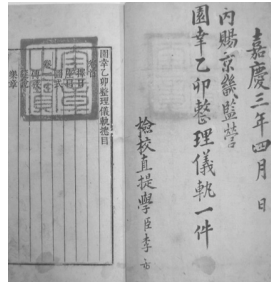
보내는 방식의 문서였다.⁴⁾ 이는 왕에게 명령을 받고 내사기를 작성하여 서적을 반사하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문서와 내사기의 공통점은 지급하는 주체가 있다는 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적 측면과, 왕명을 받은 담당자의 手決과 함께 官印 등의 공신력 있는 인장이 날인된다는 것이다. 유지의 발급일자과 담당자의 정보가 기록되는 위치가 내사기와는 정반대쪽에 있는 점을 제외하면 왕이나 장관, 또는 기타 책임자의 명에 의한 일체의 정보가 기록된 문서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은 동일한 점이라 하겠다.



「有旨」
1788年(正祖 12)



「有旨」
1830年(純祖 30)



「園幸乙卯整理儀軌」
1798年(正祖 22)

<寫眞 2> 古文書와 內賜記의 비교

왼쪽의 有旨는 1788年(正祖 12) 弘文館 修撰에 제수된 宋翼孝에게 중앙으로 속히 올라오도록 명하는 有旨로 ‘右副承旨 金履正’이 왕명을 받아 작성하고 수결한 문서이다. 가운데에 있는 有旨는 1830年(純祖 30)에 관찰사에게 내린 유지이다. 새로이 司諫에 제수된 鄭蓋이 星州에 있으니 서둘러 올라올 수 있도록 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으로, ‘左副承旨 林○○’가 왕명을 받아 작성한 문서이다. 반면 오른쪽의 內賜記는 1798年(正祖 22) 4월 왕의 명을 받아 京畿監營에 ‘園幸乙卯整理儀軌’, 1건을 반사한다는 것으로, 반사관원인 奎章閣의 ‘檢校直提學 李○○’가 수결한 것이 보인다. 有旨에는 官印인 ‘承政院印’이 찍혀있고 내사기 좌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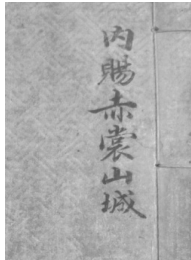
4) 국민대학교박물관, 『오백년 전 관청 이야기』 (2005), 21.

는 御寶인 『奎章之寶』가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다. 고문서의 종류와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문건의 특성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날장에 써진 고문서의 작성 형식과 서책의 표지 이면에 기록된 내사기는 그것이 서책에 작성된 여부를 떠나 문건 자체로서 고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내사본임을 밝히는 표시는 내사기와 같이 표지 裏面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표지면에도 내사본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墨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책의 표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탈락되거나 改粧한 서적에서는 볼 수 없으나, 간행당시의 원표지일 경우에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히 ‘內賜+書名’의 형식으로 나타내거나 ‘內賜+受取者’의 형태로 기록하기도 하며, 표지의 右上面 또는 右上角에 ‘內賜’라고 표기하여 裏面의 내사기를 보지 않고도 내사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內賜+縮約書名’



‘內賜+受取處’



右上面の ‘內賜’



右上角의 ‘內賜’

<寫眞 3> 內賜本 표지면의 墨書 實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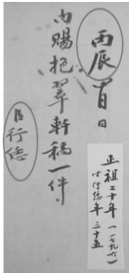
또한 일반적인 내사기도 아니며 축약형 내사기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내사기가 존재하는데 조선후기 文臣인 尹行恉⁵⁾의 성명으로 반사되었던 2건의 인본에는

5) 朝鮮後期の 文臣. 1762(英祖 38)~1801(純祖 1). 본관은 南原이고 초명은 行任이다. 자는 聖甫이며 號는 碩齋. 龍安君 宗柱의 손자이며 翊贊 琰의 아들이다. 1782年(正祖 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주서를 거쳐, 抄啓文臣으로 선발되어 규장각대교에 임명되었다. 정조시기 내내 관직의 부침을 거듭하였다. 1801年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척신 金祖淳의 사주를 받은 玉堂으로부터 서학을 신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참형 당하였다. 현종초에 신원되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文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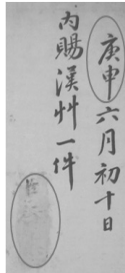
이러한 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尹行恁의 성명이 頒賜者로 기록된 1796年(正祖 20)과 1800年(正祖 24)의 『挹翠軒遺稿』와 『漢艸』의 내사기가 그러한 예이다. 2건 내사기 중 1796年 『挹翠軒遺稿』의 내사기에 ‘頒賜日子’가 中國年號가 아닌 干支로 시작되고 있고 반사자의 ‘職銜’, ‘性’, ‘手決’을 쓰게 되어 있는 관례를 무시하고, 이름인 ‘行恁’만 표기하고 있으며 受取者가 밝혀져 있지 않다. 4年 후인 1800年 『漢艸』에 작성된 내사기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날짜표기부분에 干支를 쓴 것, 직함과 성을 제외하고 이름자만 쓴 것, 受取者가 없는 것, 그리고 공통적으로 당시의 內賜印이었던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일반적인 내사기의 형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조의 신임을 받던 尹行恁이 承旨에 의해 서적을 전달받지 않고 왕으로부터 직접 서적을 하사받은 후 내사기를 작성한 경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寫眞 4>에 보이는 예외적 형식의 내사기는 하사받은 책에 본인이 직접 내사기를 작성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내사기의 또 다른 형식으로는 1867年(高宗 4)에 반사되었던 『六典條例』에 작성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사본에는 왕이 하사한다는 의미인 ‘內賜’라는 문구를 쓰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內賜’가 아닌 ‘頒賜’라는 용어를 쓴 내사기가 보인다. 실록과 같은 문헌에는 보통 서적이나 물건을 내려 줄 때 ‘頒賜’, ‘印頒’ 또는 ‘賜給’ 등의 용어를 자주 쓰고 있지만, 내사본에 기록하는 내사기에서 만큼은 ‘內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六典條例』에 기록된 내사기에는 ‘頒賜’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내사기와는 그 형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寫眞 4>의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내사기의 첫 부분인 ‘同治六年’까지는 일반 내사기와 다른 점이 없지만 뒤에 바로 ‘丁卯’라는 干支를 사용하였다. ‘年號’와 ‘干支’가 내사기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五月’이라는 ‘頒賜日子’를 표기한 다음에 ‘刊行’이라는 문구가 오는 경우도 보편적인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언급한대로 다음 행에 ‘內賜’가 아니라 ‘頒賜’라는 문구가 있는 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序文部에 內賜印 마저 없는 것으로 보아 반사 당시 규장각의 각신 또는 사자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六典條例』는 1867年(高宗 4)에 간행되어 서울과 지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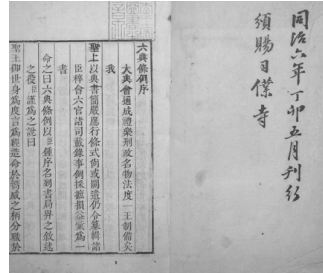
각衙門⁶⁾과 조정신료 등에게 대규모로 반사되었으며,⁷⁾ 간행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사급품의 시상까지 이루어진 인본이므로⁸⁾ 현전하는 『六典條例』의 他本에는 정례화된 내사기가 작성되고 內賜印이 날인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把翠軒遺稿」
1796年(正祖 20)



「漢州」
1800年(正祖 24)



「六典條例」
1867年(高宗 4)

<寫眞 4> 尹行恁 內賜本の 內賜記 實例

- 6) 『高宗實錄』4卷. 4年 5月 16日 戊辰. 『六典條例』纂輯所以「條例」冊子 今既印訖 謹進十秩 以備御覽. 其餘 自本所派給於京外各衙門 仍爲撤罷 啓.
- 7) 『承政院日記』高宗4年 5月 17日 己巳. 傳曰 領府事鄭元容 奉朝賀金興根 領敦寧金左根判府事趙斗淳 判敦寧李景在 判府事李裕元 左議政金炳學 右議政柳厚祚 興寅君最應 東寧尉金賢根 南寧尉尹宜善 永平君昱 完平君曷 廣州留守閔致久 原任將臣李景純·李圭徽·任泰英·李鳳周 訓將申觀浩 禁將李周喆 御將李顯稷 摠戎使申命淳 左捕將李鍾承 右捕將李元熙 吏判洪淳穆 戶判金炳國 禮判金世均 兵判金炳□ 刑判李容熙 工判俞致善 判尹李豐翼 都承旨趙性教 左承旨金元性 右承旨鄭雲龜 左副承旨趙秉式 右副承旨趙康夏 同副承旨李敦相注書李龍雨 翰林李承洙·趙秉鎬·徐爽輔·金永瑤 別兼春秋洪萬植·金性均 應教洪遠植 校理權膺善·金永爽 副校理李裕承 修撰趙晚和 行首宣傳官申櫛 行首別軍職李志謙 內閣提學金學性 直提學李載冕·趙寧夏 檢校直提學金炳地 檢校直閣閔升鎬·李淳翼·李承純 檢校待教徐相翊·鄭範朝·趙慶鎬 副提學鄭健朝 檢校直提學李載元·金炳弼·金炳始·李鎬俊 典翰李昌鎬 檢校典翰金奎弘·李明應·李鍾濬·李冕光·李根秀 奉朝賀李敦榮 判宗正卿李□重 知宗正卿李景夏·李章濂·李東鉉·李承輔·李寅爽 宗正卿李容殷·李世器·李重榮·李承駿·李升洙·李南軾·李周膺·李根永·李明錫·李邦鉉·李秉文·李彙重·李沈應·李鍾淳 各「六典條例」一件賜給.
- 8) 『承政院日記』高宗4年 5月 17日 己巳. 以「六典條例」纂輯時 摠裁官以下別單 傳曰 摠裁官判府事趙斗淳 左議政金炳學 各內下大豹皮一令賜給. 堂上行上護軍金學性 右贊成鄭基世平安監司朴珪壽 南陵君洪鍾序 各熟馬一匹賜給. 行大議軍南秉吉 加資 郎廳前副修撰鄭顯裕兒馬一匹賜 給. 其餘工匠等 令該曹木布分等施賞.

3. 記述 要素 분석

내사기에 첫째로 기록되는 요소는 ‘頒賜日子’이다.⁹⁾ 이 중 ‘頒賜年’과 ‘頒賜月’은 대부분 기록되어 있으나 ‘頒賜日’의 기록은 없는 경우도 많다. 조사 대상 본을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1606年(宣祖 39)부터 1634年(仁祖 7)까지의 내사본 33건에는 반사일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1675年(肅宗 1)부터 1776年(英祖 52)까지의 내사본 28건 중에는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사일 까지 빠짐 없이 기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시기에 반사된 25건 중에서는 13건에 만 정확한 반사일이 기록되어있고, 그 이후인 1805年(純祖 5)부터 1908年(純宗 2)에 반사된 35건 중에서는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頒賜日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20건 중 42건에만 완전한 ‘頒賜日子’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숙종시기에서 영조시기 사이에는 ‘日子’가 거의 완벽하게 기록되었고 정조 시기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조시기를 기점으로 반사일자의 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내사기에 나타난 세부요소의 정보는 서적의 반사관계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개별 정보로써 그중 특히 ‘頒賜日子’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적에는 간행년도의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출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서적들이 많다. 그러나 내사기가 있는 인본은 기록된 ‘頒賜日子’로 서적의 간행 下限年을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 만약 ‘頒賜日子’에 ‘年’뿐만 아니라 ‘月’과 ‘日’까지 쓰여 있다면 그것은 서적의 정확한 인출·간행의 월일까지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록에는 책의 인출 및 간행이 끝나는 날, 대개 임금에게 진상하였고 또 진상하는 날에 바로 반사한 예가 많았다. 따라서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면, 그 날짜를 바로 그 책의 인출과 간행이 끝난 연월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내사기의 날짜와 책의 인출·간행년도가 맞지 않는 예외도 있다. 이미 간행이 끝나고 서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후일 필요에 의해 따로 반사 하였던 경우에는 서적의 간행일자와 내사기의 반사일자가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表 2> 內賜記의 ‘頒賜日子’ 기입 현황

王朝	日子表記	日子未表記	計
宣祖	0	2	2
光海君	0	27	27
仁祖	0	4	4
肅宗	4	1	5
景宗	1	0	1
英祖	20	1	21
正祖	13	12	25
純祖	1	0	1
憲宗	0	2	2
哲宗	1	3	4
高宗	2	25	27
純宗	0	1	1
計	42	78	120

더불어 내사기와 문헌을 대조해 보면, 내사기상의 반사일과 문헌상의 반사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간행된 서적을 진상하면 왕이 하사할 대상을 검토하고 반사를 명하게 되는데, 반사의 명을 내린 날짜와 내사기의 반사일이 보통 며칠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반사할 대상이 많을 때 담당자가 왕의 명을 득한 후, 서적을 확보하고 내사기를 작성하는 등의 소요시간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문헌기록과 내사기기록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왕이 반사의 명을 내린 날, 내사기가 작성된 날, 受取者가 서적을 입수한 날은 모두 다를 수 있는 것이다. ‘頒賜日子’의 일반적인 표기방법은 ‘萬曆四十一年九月日’ 또는 ‘康熙十四年正月二十九日’ 등 당시 중국 황제의 年號를 먼저 쓰고 그 뒤에 年, 月, 日을 기록하였다. 앞서 본 사진의 예와 같이 간혹 연호 대신 그해의 干支를 사용하여 ‘庚申六月初十日’과 같이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사례는 흔치 않다.

둘째 요소는 ‘內賜’로써 ‘頒賜日子’를 쓴 다음에는 왕이 하사한 인본임을 명시하는 ‘內賜(大內=임금이 하사함)’의 단어를 작성한다. 간혹 ‘頒賜’로 쓴 내사기가 있으나 이례적인 형식이다.

셋째 요소는 ‘受取者’이다. ‘內賜’의 두 글자 다음에는 내사본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受取者’의 정보가 기록된다. 개인일 경우는 수사자의 관직명이 앞에 오고 뒤에 성명을 써서, ‘議政府領議政 鄭湖’, ‘行司直 蔡濟恭’ 등으로 표기하고 관청일 경우에는 ‘禮曹’ 또는 ‘弘文館’과 같이 관청명만 기록한다. 1785年(正祖 9)에 반사된 『宮園儀』에는 ‘受取者’를 ‘景慕宮’¹⁰⁾이라 하여 반사하였는데 내사기의 마지막에 ‘守僕房所在’¹¹⁾라는 글자를 써 두었다. 景慕宮에 서적을 올리되 관리처인 景慕宮의 守僕房에서 소장하여 두라는 의미를 담은 기록이라 할 수 있겠다.¹²⁾ 또한 내사본의 ‘受取者’를 밝히는 기록은 보통 ‘實錄’이나 『承政院日記』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는 ‘頒賜件’별로 서적 裏面의 내사기에 ‘受取者’를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 이외에도 서적의 受取者를 달리 기록했던 예가 있었다. 실례로 1771年(英祖 47)에 반사된 『御製樹德全編』에는 卷末에 受取者의 명단을 미리 기록하여 板刻한 후 간행하였다. 내용은 ‘辛卯年 臘月 庚午日’에 서적을 간행하여 반포하고, 판목은 史局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受取者는 大殿 5건, 世孫宮 1건, 五處史庫, 在京2品 이상의 時原任大臣, 奉朝賀, 六曹와 八道道臣 … 薇院(司諫院), 柏府(司憲府), 翰注(翰林, 注書)에게 御寶를 날인한 후 1건씩 반사하도록 하였다.¹³⁾ 이처럼 하사할 대상을 서적의 내용에 포함시켜 간행한 것은 매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식으로 帖紙에 기입하고 표지 裏面에 붙여 受取者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예도 나타난다. 실례로 1759年(英祖 35) 正祖의 세손책봉과 관련하여 반사된 『冊封儀便覽』에는 ‘禮曹’에 반사하는 서적에 帖紙를 붙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적 頒賜시 기본 ‘受取處’인 禮曹에 우선 반사하고, 나머지 ‘受取者’를 표기한 帖紙를 붙여 두어 확인하기 쉽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서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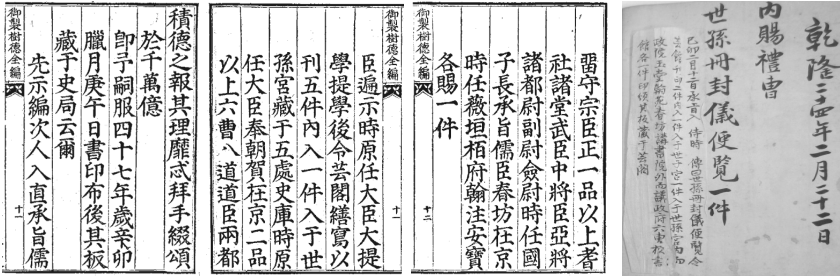
10) 景慕宮은 莊祖(莊獻世子)와 그의 妃 獻敬王后를 모신 祠堂.

11) 守僕房은 조선시대에 宗廟나 王陵 등을 관리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거처였다.

12) 『宮園儀』 內賜記: 乾隆五十年八月初九日景慕宮上宮園儀一件守僕房所在.

13) 『御製樹德全編』 卽序嗣服四十七年 歲辛卯臘月庚午日 書印布後 其板藏于 史局云爾 先示編次人 入直承旨儒臣 遍示時 原任大臣大提學提學後令 芸閣繕寫以 刊五件內入 一件入于世孫宮 藏于五處史庫 始原任大臣奉朝賀在京二品以上 六曹八道道臣兩都留守宗臣正一品以上 耆社諸堂武臣中將臣亞將 諸都尉副尉僉尉 時任國子長承旨儒臣春坊在京時任 薇院柏府翰注 安寶各賜一件.

‘受取處’는 모두 관청이었다. 校書館에서 간행한 후 2건을 大殿에 內入하고 世子宮과 世孫宮에 각 1건씩 內入하도록 하였다. 또한 承政院, 玉堂(弘文館), 翰苑(翰林院, 禮文館), 春坊, 講書院, 議政府, 六曹, 校書館에 각 1건씩 반사하고, 판목은 校書館에 보관하도록 하였다.¹⁴⁾



『御製樹德全編』
1771年(英祖 47)

『世孫冊封儀便覽』
1759年(英祖 35)

<寫眞 5> 受取者(處) 기술의 특이 實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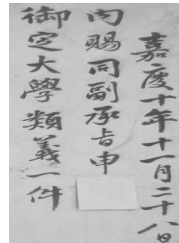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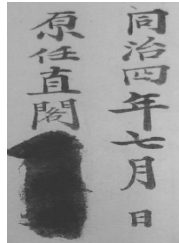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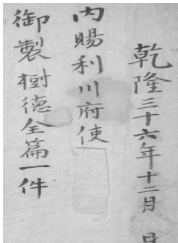
한편 내사기에 간혹 受取者의 성명란이 잘려 있거나 먹으로 그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흔히 역모, 대역죄, 기타 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가문의 수치라 하여 영예롭게 하사받았던 서적을 생전이나 사후에 그 이름자를 도려내기도 하였고, 훗날 후손들이 가문의 유물을 처분할 때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밖에 나돌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미리 지우고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오려 내거나 먹으로 지운 것은 서적 受取者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史料로서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¹⁵⁾

조사 대상본 중에도 姓名字에 먹칠을 했거나 도려낸 예가 나타난다. 1723年(景宗 3) 4월 同副承旨에게 반사한 『列聖御筆』, 1771年(英祖 47) 12월 利川府使에게

14) 『世孫冊封儀便覽』 己卯二月十二日承旨入侍時 傳曰世孫冊封儀便覽 今芸館刊印二件內入一件入于世子宮一件入于世孫宮 內而政院玉堂翰苑春坊講書院 外而議政府六曹校書館 各一件印頒其板藏于芸閣.

15) 앞의 논문. “內賜記와 內賜印記,” 29.

반사한 『御製樹德全編』, 1783年(正祖 7) 正月 檢校直閣에게 반사된 『程書分類』 등 3건은 姓名字가 깨끗이 도려내어져 있고, 1850年(哲宗 1) 6월 原任提學에게 반사된 『兩陵誌狀續編』과 1865年(高宗 2) 7월 原任直閣에게 반사된 『睿陵誌狀』 등 2건은 이름자를 먹으로 칠해 受取者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 그 중 1771年 『御製樹德全編』 1건을 하사받은 利川府使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서적을 반사 받을 당시의 利川府使는 徐有常이었다. 다음해인 1772年(英祖 48) 8월에 司諫 鄭彥郁은 利川府使 재직시절 조세포탈과 그에 대한 은폐의 책임을 물어 徐有常의 과직을 요청하였고¹⁶⁾ 10월에는 掌令 愼爾復도 徐有常의 흠결을 언급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⁷⁾ 따라서 기록상으로만 가정해 볼 때는 세금포탈 및 범죄사실 은폐의 이유로 공직에서 과면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으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책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 자랑스러운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이름자 위에 종이를 붙여 避諱하기도 하였다. 1805年(純祖 5)에 ‘同副承旨 申絢’이 하사받은 서적에는姓 아래의 이름자에 종이를 붙여 두어 쉽게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례도 보인다.



『御製樹德全編』 1771年(英祖 47) 『睿陵誌狀』 1865年(高宗 2) 『御定大學類義』 1805年(純祖 5)

<寫眞 6> 內賜記의 훼손 및 避諱 實例

- 16) 『英祖實錄』, 卷119. 48年 8月 16日 戊寅. 司諫 鄭彥郁 啓曰 徐有常 曾經 利川 以其本府逋欠之數多 要免歲末文書之磨勘 請由作行往留 抱川 圖差兼官 延挖過歲 其爲設計 誠甚不韙. 道臣之曲循顏私 差出無前之兼官 不可無飭請當該道臣罷職. 上曰 依啓.
- 17) 『英祖實錄』, 卷119. 48年 10月 28日 己丑. 羅州 牧使 徐有常 曾任 利川 也 逋欠數多 臺言峻發道臣既被譴罷則 徐有常 之所犯 自在其中 其在自處之道 不可以已經大需 晏然赴任. 臣謂 徐有常 罷黜之典 斷不可已.

넷째 요소는 ‘書名’으로 이는 ‘受取者’의 다음 순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書名’은 반사하는 책의 本書名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축약해서 쓰기도 한다.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과 같은 긴 서명을 줄여서 『斥邪綸音』으로 표기하거나,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滅綸音』을 『施惠綸音』으로 줄여 쓰기도 하였다.

<表 3> 內賜記의 書名 縮約 實例

本書名	縮約書名
御定奎章全韻	奎韻
奎章閣志	閣志
文臣講製節目	講製節目
國朝五禮儀	五禮儀

다섯째 요소는 ‘頒賜件’으로 ‘書名’ 뒤에 바로 따라붙어 ‘書名+頒賜件’과 같이 공식처럼 사용되었다. 시기 또는 작성자에 따라 세부요소의 위치변화가 조금씩 나타났음에도 ‘書名’과 ‘頒賜件’의 기재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편 반사 수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내사기와 문헌에는 ‘頒賜件’을 ‘受取者’당 1건씩 기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사례로 동시에 2건을 반사한 기록도 보인다. 1723年(景宗 3)¹⁸⁾과 1725年(英祖 1)¹⁹⁾에 각각 반사되었던 2건의 『列聖御筆』에는 ‘頒賜件’이 2건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⁰⁾ 이 2건은 景宗時期와 英祖元년에 각각 繼刊된 『列聖御筆』이다. 당시 『列聖御筆』을 간행할 때는 陰刻하여 帖으로 만들고 陽刻하여 冊으로 만드는 전통이 있었으므로 ‘列聖御筆 二件’의 의미는 石刻本 1건과 木刻本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¹⁾

18) 『列聖御筆』 內賜記: 雍正元年四月二十六日內賜承政院同副承旨×××列聖御筆二件命除謝恩右承旨臣呂.

19) 『列聖御筆』 內賜記: 雍正三年十月十一日內賜綾昌君櫛列聖御筆二件命除謝恩右承旨臣朴.

20) 『列聖御筆』 외에 2건을 頒賜한 예는 찾지 못하였다.

21) 이완우, “조선 후기 ‘列聖御筆’의 摹刊과 廣布,” 『조선시대 인쇄출판 정책과 역사 발전』 (淸州古印刷博物館, 2007),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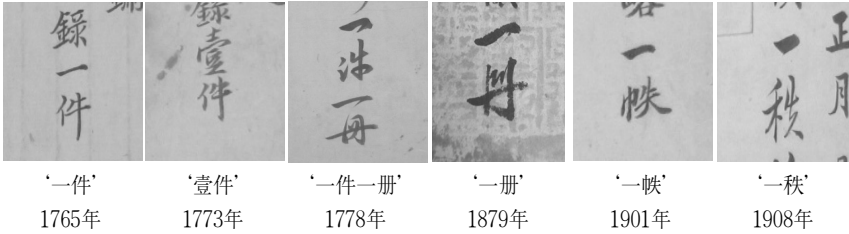
반면에 ‘頒賜件’ 표기가 없는 내사기도 존재하고 있다. 1796年(正祖 20) 赤裳山史庫에 반사된 『御定奎章全韻』이 그러한 예이다. 사고에 반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命除謝恩’을 제외하면 ‘頒賜日子’부터 ‘頒賜者’까지 기록된 완전한 내사기 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다음에 ‘頒賜件’이 빠져 있다. 調査本 중 축약형 등 예외형식의 내사기를 제외하고, 세부요소를 모두 갖춘 완전한 내사기 가운데 ‘頒賜件’ 표기가 없는 유일한 예이다. 이 인본은 조선후기 사급품 등으로 빈번하게 반사되었던 후쇄본이 아닌 初刊本으로써 내사기의 서명이 『御定新印奎章全韻』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件’으로 표시되는 서적의 반사단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서적의 반사단위에 관하여 安秉禧는 “서명 뒤에는 一籠, 또는 1부를 뜻하는 ‘一件’이 반드시 있고… 이 서명 뒤의 ‘一件’이 ‘一秩’로 적힌 내사본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유일한 예인 藏書閣에 수장된 『程書分類』의 乾隆四十八年正月日內賜程書分類一秩檢校直閣××命除謝恩同副承旨臣李(手決)’이라는 내사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一秩’은 1책 1부인 경우에 쓰이는 ‘一件’과 달리, 항상 2책 이상으로 된 책 1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책은 여러 책으로 된 ‘一秩’이라도 내사기에서 항상 ‘一件’으로만 적혔다. 내사기의 一秩이 관행의 ‘一件’을 대신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중략…) 착오로 말미암은 일이 아닐까한다”라고 하였다.²²⁾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책의 수량에 관계없이 반사단위를 ‘件’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調査本 중에도 이와 같은 경우의 다른 예가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내사본 중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1908年(純宗 2) 8월에 ‘海豊府院君 尹澤榮’에게 반사된 『璿源系譜記略』의 내사기에도 반사단위가 ‘一件’이 아닌 위와 같은 ‘一秩’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서적의 자료적 특성, 반사시기, 반사관청, 시대상황 등에서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내사기를 필사한 작성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22)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4.

이외에도 반사단위의 표기에서 몇 가지 다른 형태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1773年(英祖 49)에 ‘禮曹參判 沈頤之’에게 반사된 『慶運宮廢載錄』에는 ‘一件’을 ‘一’의 갖은자인 ‘壹’을 사용하여 ‘壹件’으로 쓴 예가 있고, 1778年(正祖 2) ‘禮曹’에 반사된 『御定欽恤典則』에는 ‘一件一冊’으로 ‘件’과 ‘冊’의 수량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1879年(高宗 16)에 ‘幼學 魚在九’에게 반사된 『御定奎章全韻』에는 ‘一冊’으로 ‘冊數’만 표기하였고, 1901年(高宗 5) ‘量地衙門 摠裁 朴定陽’에게 반사된 『濬源系譜記略』에는 ‘一帙’로 기록된 예가 있음을 볼 때, 서적의 반사단위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단위가 사용되었더라도 사용 시기는 조선후기에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을 뿐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대부분의 단위는 ‘一件’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寫眞 7> 內賜本の ‘頒賜件’ 표기 實例

여섯째 요소는 ‘命除謝恩’이다. 命除謝恩은 임금이 서적을 하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생략해도 좋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에게 반사하여 그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일일이 인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명문화한 것이다. 보통 3행의 ‘命除謝’와 4행의 ‘恩’자는 이어서 ‘命/除/謝恩’으로 보면 된다. ‘命’과 ‘恩’의 두 글자를 나누어 다른 글자보다 一段을 높여 쓴 이유는 ‘임금의 명령’과 ‘임금에 대한 은혜’라는 뜻으로 임금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올려 쓴 것이다. 또한 개인본과 달리 기관에 반사하는 서적의 대부분은 命除謝恩을 생략하였지만 예외일 때도 있었다. 調查本 가운데 예외의 사례로는 <표 4>와 같이 7건으로 나타나며²³⁾ 1866년에 반사된 『三班禮式』 2건 이외에는 모두 禮曹에 반사한 서적의 내사기에

만 ‘命除謝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表 4> 官廳 內賜本の ‘命除謝恩’ 實例

時期	書名	受取者(處)
1772(英祖48)	御製永垂百世錄	禮曹
1776(正祖卽)	宮園儀	禮曹
1778(正祖2)	御定欽恤典則	禮曹
1783(正祖7)	字恤典則	禮曹
1866(高宗3)	三班禮式	通禮院
	三班禮式	禁衛營
1871(高宗8)	弘文館志	禮曹

일곱 번째 요소는 ‘頒賜者’ 정보이다. 내사기에서 볼 수 있는 반사자는 대부분 승정원의 승지와 규장각의 각신이다. 승정원에서 반사의 실무를 맡았을 때는 승정원의 관직들이 기록되고, 정조 이후 규장각에서 반사의 실무를 맡았을 때는 규장각의 관직이 나타난다. 예외로 世子侍講院의 兼設書, 內侍府의 承傳色, 弘文館의 副提學이 반사자로 참여한 사례가 보이고 대한제국 시대에는 秘書院의 관직이 나타나기도 한다. ‘頒賜者’ 정보는 ‘職銜’, ‘姓’, ‘手決’의 3가지로 세분화된다. 먼저 반사자의 ‘職銜’을 쓰고 ‘臣+姓’의 형태로 작성된다.²⁴⁾ ‘姓’ 다음에 ‘手決’을 놓음으로써 반사자의 정보가 완성되고 ‘右承旨臣徐(手決)’, ‘奎章閣直閣臣金(手決)’ 또는 ‘直閣臣李(手決)’ 등과 같은 형태가 된다. ‘職銜’과 ‘姓’ 사이의 ‘臣’은 다른 글자보다 비교적 작게 쓰여 지는데 임금의 신하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내사기의 7가지 세부요소를 살펴보았고,

23) 『御製永垂百世錄』 內賜記: 乾隆三十七年三月二十八日內賜禮曹御製永垂百世錄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朴. 『宮園儀』 內賜記: 乾隆四十一年十二月三十日內賜禮曹宮園儀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趙. 『御定欽恤典則』 內賜記: 乾隆四十三年正月十三日內賜禮曹御定欽恤典則一件一冊命除謝恩右副承旨臣李. 『字恤典則』 內賜記: 乾隆四十八年十一月日內賜禮曹字恤典則官上一件命除謝恩待教臣李. 『三班禮式』 內賜記: 同治五年八月日內賜通禮院三班禮式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金, 同治五年八月日內賜禁衛營三班禮式一件命除謝恩同副承旨臣金. 『弘文館志』 內賜記: 同治十年正月日內賜禮曹弘文館志一件命除謝恩副提學臣李.

24) 간혹 완전한 성명을 모두 기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사본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의 <表 5>는 調査本 120건에 대한 내사기의 각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각각의 요소에 대한 내용과 120건의 실제 기술 요소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내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表 5> 內賜記의 記述 要素 分포

時期	頒賜年	書名	年號 年月	日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宣祖	1606	皇華集	○	×	×	○	○	○	×	×
	1606	皇華集	○	×	×	○	○	○	×	×
光海君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皇華集	○	×	×	○	○	×	×	×
	1608	東國兵鑑	○	×	×	○	○	○	×	×
	1610	皇華集	○	×	×	○	○	○	×	○
	1611	春秋左氏傳	○	×	○	○	○	○	×	×
	1611	國朝五禮儀	○	×	×	○	○	○	×	×
	1612	小學	○	×	○	○	○	○	×	○
	1612	朱子書節要	○	×	○	○	○	○	×	○
1613	大典續錄	○	×	○	○	○	○	×	○	
1613	大典後續錄	○	×	○	○	○	○	×	○	
1614	資治通鑑綱目	○	×	×	○	○	○	×	×	

조선시대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仁祖	1629	小學	○	×	×	○	○	○	×	×
	1631	大學諺解	○	×	○	○	○	○	×	×
	1631	中庸諺解	○	×	○	○	○	○	×	×
	1631	孟子諺解	○	×	○	○	○	○	×	×
肅宗	1675	故事撮要	○	○	○	○	○	○	○	○
	1693	孟子諺解	○	×	○	○	○	○	○	○
	1704	春秋四傳	○	○	○	○	○	○	○	○
	1705	節齋通編	○	○	○	○	○	○	○	○
景宗	1719	列聖誌狀通紀	○	○	○	○	○	○	○	○
	1723	列聖御筆	○	○	○	○	○	○	○	○
英祖	1725	列聖御筆	○	○	○	○	○	○	○	○
	1726	周易傳義大典	○	○	○	○	○	○	○	○
	1741	御製大訓	○	○	○	○	○	○	○	○
	1744	光國志慶錄	○	○	○	○	○	○	○	○
	1752	御製守城繪音	○	○	○	○	○	○	×	○
	1755	闡義昭鑑	○	○	○	○	○	○	×	○
	1756	御製訓書	○	○	○	○	○	○	×	○
	1758	國朝喪禮補編	○	○	○	○	○	○	×	○
	1759	御製世孫冊封儀便覽	○	○	○	○	○	○	×	○
	1759	敦寧府揭板印本帖	○	○	○	○	○	○	○	○
	1762	奉教嚴辨錄	○	○	○	○	○	○	×	○
	1765	國朝樂章	○	○	○	○	○	○	×	○
	1765	御製受爵廢韻錄	○	○	○	○	○	○	○	○
	1766	御製小學指南	○	○	○	○	○	○	○	○
	1767	御製廢帖	○	○	○	○	○	○	○	○
	1770	御製續永世追慕錄	○	○	○	○	○	○	○	○
	1771	御製樹德全編	○	○	○	○	○	○	○	○
	1771	御製樹德全編	○	×	○	○	○	○	○	○
	1772	御製永垂百世錄	○	○	○	○	○	○	○	○
1773	銅闈冠禮文	○	○	○	○	○	○	×	○	
1773	慶運宮廢載錄	○	○	○	○	○	○	○	○	
正祖	1776	英宗大王御製續編	○	○	○	○	○	○	○	○
	1776	宮圓儀	○	○	○	○	○	○	○	○
	1778	御定欽恤典則	○	○	○	○	○	○	○	○
	1782	宗親文武百官繪音	○	×	○	○	○	○	×	○
	1782	宗親文武百官繪音	○	×	○	○	○	○	×	○
	1782	宗親文武百官繪音	○	×	○	○	○	○	○	○
	1783	程書分類	○	×	○	○	○	○	○	○
	1783	字恤典則	○	×	○	○	○	○	○	○
1783	字恤典則	○	○	○	○	○	○	○	○	

	1783	字恤典則	○	○	○	○	○	○	○	○
	1784	弘文館志	○	○	○	○	○	○	×	○
	1784	奎章閣志	○	○	○	○	○	○	×	○
	1784	御製諭大小臣僚繪音	○	○	○	○	○	○	×	×
	1784	施惠繪音	○	○	○	○	○	○	○	○
	1784	王世子册封慶龍虎榜	○	○	○	○	○	○	×	○
	1785	宮園儀	○	○	×	○	○	○	×	×
	1785	宮園儀	○	○	×	○	○	○	×	×
	1795	元陵展省日聯韻軸	○	×	○	○	○	○	○	○
	1796	挹翠軒遺稿	○	×	○	×	○	○	×	○
	1796	御定奎章全韻	○	×	○	○	○	○	×	○
	1796	御定奎章全韻	○	×	○	○	○	○	×	○
	1798	園幸乙卯整理儀軌	○	×	○	○	○	○	×	○
	1799	御製太學恩杯詩	○	×	○	○	○	○	○	○
	1800	文臣講製節目	○	×	○	○	○	○	○	○
	1800	漢艸	○	○	○	×	○	○	×	○
純祖	1805	御定大學類義	○	○	○	○	○	○	○	○
憲宗	1839	斥邪繪音	○	×	○	○	○	○	○	○
	1840	奎章閣志	○	×	○	○	○	○	○	○
哲宗	1850	兩陵誌狀續編	○	×	○	○	○	○	○	○
	1852	文苑黼黻續編	×	×	○	×	○	○	×	×
	1854	朱書百選	○	○	○	○	○	○	○	○
	1860	宮園儀	○	×	○	○	○	○	○	○
高宗	1865	睿陵誌狀	○	×	○	○	○	○	○	○
	1865	兩銓便攷	○	×	○	○	○	○	○	○
	1866	御定奎章全韻	○	×	○	○	○	○	○	○
	1866	三班禮式	○	×	○	○	○	○	○	○
	1866	三班禮式	○	×	○	○	○	○	○	○
	1867	六典條例	○	×	○	○	×	×	×	×
	1868	三班禮式	○	×	○	○	○	○	○	○
	1868	三班禮式	○	×	○	○	○	○	○	○
	1868	三班禮式	○	×	○	○	○	○	×	○
	1868	三班禮式	○	×	○	○	○	○	×	○
	1868	三班禮式	○	×	○	○	○	○	×	○
	1870	朱書百選	○	○	○	○	○	○	○	○
	1871	弘文館志	○	×	○	○	○	○	○	○
	1871	弘文館志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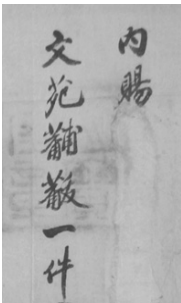
	1872	春秋左氏傳	○	×	○	○	○	○	○	○
	1875	璿源系譜記略	○	○	○	○	○	○	○	○
	1879	御定奎章全韻	○	×	×	○	○	○	×	○
	1881	御定奎章全韻	○	×	○	○	○	○	○	○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	×	×	○	○	○	×	○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	×	×	○	○	○	×	○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	×	○	○	○	○	×	○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	×	○	○	○	○	○	○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論音	○	×	○	○	○	○	○	○
	1891	离院條例	○	×	○	○	○	○	○	○
	1892	御定奎章全韻	○	×	○	○	○	○	○	○
	1900	皇命詔令	○	×	○	○	×	×	×	×
	1901	璿源系譜記略	○	×	○	○	○	○	○	○
純宗	1908	璿源系譜記略	○	×	○	○	○	○	○	○

위의 <表 5>를 살펴보면 광해군 시기인 1608년에 반사되었던 『皇華集』의 내사기에는 ‘頒賜年月’ 외에 ‘受取者’와 ‘書名’의 요소만 기록되어 있다. 1610년(光海 2)에 반사된 『皇華集』을 시작으로 ‘內賜’와 ‘頒賜者’의 기록이 추가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仁祖朝까지는 대체적으로 내사기의 각 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조 때 반사된 4건의 내사본 중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는 모두 1631년(仁祖 9)에 일괄적으로 반사된 것이기 때문에, 내사기에 나타나는 記述 요소들이 모두 동일하다. 광해군시기에서 인조시기로 이어져 오는 동안 반사된 인본 중 조사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사고의 내사본이며, 이들은 대체로 내사기에 포함된 요소들이 충실하지 못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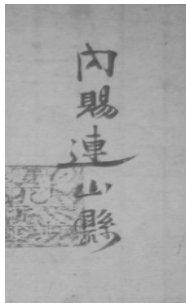
내사기에 각종 요소들이 정확히 반영되는 시기는 숙종시기에서 영조시기까지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頒賜年·月은 물론 ‘日子’ 표기부터 ‘頒賜者’에 이르기까지 내사기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었고, 개인내사본과 기관내사본에 따라 ‘命除謝恩’이 추가되거나 빠진 것을 제외하면 완벽한 내사기를 작성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조 시기에도 대부분 정례화 된 내사

기의 작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日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상기 하였듯이 정조 시기부터는 내사기의 요소들이 순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 등 숙종시기와 영조시기에 작성된 내사기 만큼 완벽한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頒賜日子’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던 점만을 제외한다면, 정조시기 이후에도 비교적 충실한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字恤典則』, 『三班禮式』, 『斥邪綸音』 등과 같이 간행 및 반사의 규모가 큰 인본 일 경우는 동일시기에 반사되었다 하더라도 ‘頒賜者’ 및 내사기를 작성한 필사자의 차이에 따라 기재된 세부요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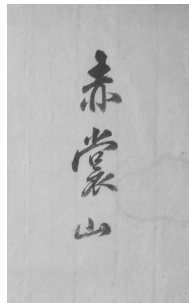
내사기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갖춘 정형화된 내사기가 있는가 하면, 간략하게 축약하여 기록한 형태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史庫나 官廳에 반사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頒賜日子’와 ‘受取處’만 표기하거나, ‘內賜’와 ‘書名’, ‘頒賜件’만 표기한 경우가 있으며 ‘受取處’만 표기한 축약형 내사기도 나타난다. 史庫나 官廳에 반사할 때는 개인에게 반사할 때와는 달리 受取者의 직함이 없고, 대부분 ‘命除謝恩’이 생략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 본의 내사기 보다는 길이가 짧고 간결한 편이다.



‘內賜+書名+頒賜件’
『文苑黼黻續編』
1854(哲宗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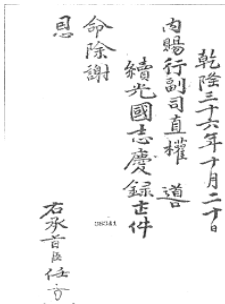
‘內賜+受取處’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正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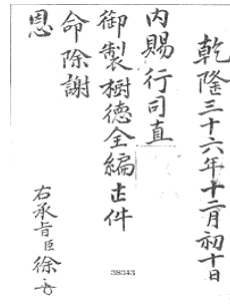
‘受取處’
『文苑黼黻』
1787(正祖 11)

<寫眞 8> 內賜記의 縮約 實例

한편 이렇게 내사기를 쓴 書寫者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安秉禧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내사기 자체만 본다면 당연히 수결의 당사자인 승지나 각신 등이 직접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날, 같은 반사자의 내사기 글씨가 다른 경우가 있다. 반대로 수결의 승지나 각신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의 내사기 글씨가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書寫에 능한 승정원이나 규장각의 寫字官과 같은 雜織이 작성하고 承旨나 閣臣은 수결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당상관인 승지가 수십·수백 件에 달하는 내사기를 모두 다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 공문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각 관아에 소속된 잡직들의 몫이었다. 이에 대한 예로 내사기의 용어 중 반사단위를 나타내는 ‘一件’이라는 문구의 표기를 年月日과 같이 單字 또는 小字로 쓰도록 된 관례를 무시하고, 大字 ‘壹’의 俗字인 ‘正’을 쓴 경우가 있다(사진 9). 이 속자는 고문서의 明文 등에 ‘壹’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글자로 왕실문서나 土類의 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光國志慶錄』, 1771年(英祖 47)



『御製樹德全編』, 1771年(英祖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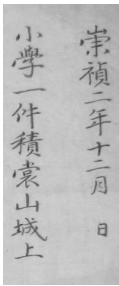
<寫眞 9> ‘一’의 俗字 ‘正’의 표기 實例

조사본에서 위의 글자를 사용하여 ‘頒賜件’을 표기한 예는 없지만 다른 형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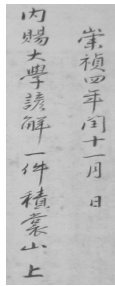
25)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16.

경우가 몇 가지 확인된다. 1629年(仁祖 7)에 赤裳山史庫에 반사된 『小學』과 1631年(仁祖 9)에 赤裳山史庫에 반사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의 내사기를 보면 ‘赤裳山’의 ‘赤’을 ‘積’으로 써서 ‘積裳山’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승정원의 승지나 규장각의 각신이 아닌 필사자의 실수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수로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4종의 필체를 비교해 보면 1631年 閏11월에 반사한 『大學諺解』, 『中庸諺解』, 『孟子諺解』 중에서 『大學諺解』와 『中庸諺解』의 내사기 필체는 같은데 반하여 『孟子諺解』의 필체는 조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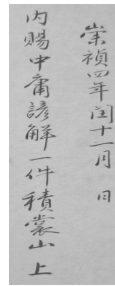
따라서 3종의 내사기는 같은 필사자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大學諺解』와 『中庸諺解』의 受取處는 ‘赤裳山上’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孟子諺解』는 ‘赤裳山城上’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일시기에 같은 필사자가 작성한 내사기에 ‘赤裳山上’과 ‘赤裳山城上’처럼 달리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1629년에 반사된 『小學』의 내사기 필체도 위의 세 종류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積裳山’으로 표기된 4건의 내사기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각각 다른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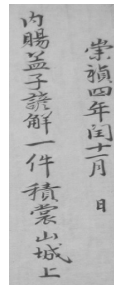
『小學』
1629年(仁祖 7)



『大學諺解』
1631年(仁祖 9)



『中庸諺解』
1631年(仁祖 9)



『孟子諺解』
1631年(仁祖 9)

<寫眞 10> ‘赤裳山’의 ‘積裳山’ 표기 實例

내사기를 작성할 때는 사자관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

로 바꿔 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調査本 가운데 사고에 반사되었던 서적의 내사기 표기양식을 보면 같은 受取處 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 6>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한 예가 많다.

<表 6> '史庫' 표기의 實例

區分	妙香山史庫	赤裳山史庫
1	香山	赤裳山
2	妙香山	赤裳山城
3	香山史庫	赤裳山史庫
4	妙香山史庫	赤裳山城史庫
5	香山實錄史庫	
6	妙香山實錄史庫	

頒賜者の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동일인물의 1회성 실수가 아니고 2년간 3인의 필사자가 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히 잡직 필사자의 誤記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잡직이라 하여도 당시 관청에서 필사를 담당하던 관리들이 흔히 쓰던 지명을 실수로 誤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오히려 당시에는 '積'이라는 글자가 '赤裳山'을 표기하는 한 수단이었음지도 모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記述類型 분석

장서각 소장 조사 대상본 120건의 전체를 분석해보면 21종의 내사기 유형이 나타난다. 전체 양식의 큰 변화는 없지만 세부요소의 순서 변화가 빈번하였고 때에 따라 일부요소가 표기되지 않는 등의 변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7>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表 7> 內賜記의 記述 實例

番號	年號	年	月	日	中心要素의 변화			命除謝恩	頒賜者	回數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1	年號	年	月	日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25
2	年號	年	月		書名	受取者					18
3	年號	年	月		受取者	內賜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14
4	年號	年	月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13
5	年號	年	月	日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頒賜者	11
6	年號	年	月		內賜	書名	頒賜件	受取者		頒賜者	6
7	年號	年	月		書名	頒賜件	受取者				6
8	年號	年	月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頒賜者	5
9	年號	年	月		內賜	書名	頒賜件	受取者			4
10	年號	年	月		內賜	受賜者	書名			頒賜者	2
11	年號	年	月		內賜	書名	頒賜件	受取者	命除謝恩	頒賜者	2
12	年號	年	月	日	受取者	內賜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頒賜者	2
13	年號	年	月		受取者	書名	頒賜件			頒賜者	2
14	年號	年	月	日	受取者	書名	頒賜件				2
15	年號	年	月		書名	頒賜件	受取者			頒賜者	1
16	年號	年	月	日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1
17	年號	年	月		內賜	受取者					1
18	干支		月	日	內賜	書名	頒賜件				1
19	干支		月		內賜	書名	頒賜件				1
20	干支		月		受取者	書名	頒賜件			頒賜者	1
21					內賜	書名	頒賜件				1

내사기는 7가지의 세부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사관청과 담당관원 및 필사자의 성향에 따라 세부요소가 미표기된 것부터 순서가 바뀌는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내사기의 표준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정조시기를 기준으로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7가지 요소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된 시기는 숙종과 영조시기이며 숙종 이전과 정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頒賜年과 月, 이외에 ‘日子’ 표기는 정확한 사급일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調查本을 분석한 결과 일자의 표기는 숙종·영조 두 왕조

에서 가장 많았고, 이전 왕조와, 조선말기로 오면서는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둘째는 정조 이전에는 ‘內賜’의 단어가 ‘頒賜日子’ 바로 다음에 오는데 반해, 정조 이후부터는 ‘受取者’가 ‘頒賜日子’ 다음에 위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이다. 축약형을 제외하고도 내사기가 총 21종의 유형으로 나뉘게 된 이유는 1~2가지 요소가 누락된 것까지 각기 다른 내사기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6>의 내사기 기술 유형을 보면 年號·年·月·日을 포함하는 앞부분의 ‘頒賜日子’와 후반부의 ‘命除謝恩’과 ‘頒賜者’의 작성형태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서로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순서변화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調査本의 내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의 형식 1번이다. ‘1번’과 ‘4번’ 내사기의 형태적 차이점은 ‘頒賜日’ 유무의 차이일 뿐 동일형식이다. ‘1번’과 ‘5번’ 내사기간의 차이점은 관청에 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命除謝恩’ 유무의 차이이고, 그 이외에는 내사기의 각 요소와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은 동일한 유형의 내사기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8번’, ‘10번’, ‘16번’, ‘17번’까지 7종류의 내사기는 ‘內賜’ → ‘受取者’ → ‘書名’ → ‘頒賜件’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순서의 양상을 보이므로 동일한 표현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3번’ 내사기와 ‘12번’ 내사기도 반사일 유무의 차이일 뿐 ‘受取者’ → ‘內賜’ → ‘書名’ → ‘頒賜件’의 순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동일 유형으로 볼 수 있다. ‘6번’, ‘9번’, ‘11번’, ‘18번’, ‘19번’, ‘21번’까지 5종류의 내사기는 (年號·干支) → ‘內賜’ → ‘書名’ → ‘頒賜件’ → ‘受取者’의 순서이므로 동일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7번’과 ‘15번’ 내사기는 ‘內賜’의 글자가 없이 ‘書名’ → ‘頒賜件’ → ‘受取者’만 표기되는 등 형식의 순서가 동일하여 한 가지 형식으로 볼 수 있다. ‘13번’, ‘14번’, ‘20번’ 내사기는 (年號·干支) → ‘受取者’ → ‘書名’ → ‘頒賜件’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므로 동일 형식의 내사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 약식으로 표기된 몇 종류의 내사기를 제외하면, 내사기는 각 요소의 순서변화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커다란 양식 변화 없이 조선시대 전 기간 그 틀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것 끼리 묶어서 정리해보면 주로 작성된 내사기의 유형을 대략 아래 6종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表 8> 內賜記의 類型 분석

類型	頒賜日子	中心要素				命除謝恩	回數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제1형	頒賜日子	內賜	受取者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58
제2형	頒賜日子	書名	受取者				18
제3형	頒賜日子	受取者	內賜	書名	頒賜件	(命除謝恩)	16
제4형	頒賜日子	內賜	書名	頒賜件	受取者	(命除謝恩)	15
제5형	頒賜日子	書名	頒賜件	受賜者			7
제6형	頒賜日子	受取者	書名	頒賜件			5

분석 결과 제1형의 내사기가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형의 내사기는 1608年(光海君即位年) 9월에 『皇華集』 18건을 妙香山史庫에 대량으로 반사할 때 작성되었던 것인데 당시 사용된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²⁶⁾ 제3형은 1형과 비교 시 ‘內賜’와 ‘受取者’의 위치만 서로 바뀌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4형은 1형과 비교 시 ‘書名+頒賜件’과 ‘受取者’의 위치가 바뀐 형태이다. 7가지의 세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사기의 유형은 1형, 3형, 4형으로써 이 3가지 유형의 내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형태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6) 『皇華集』에 날인된 인장은 먼저 1606년에 동일한 사고에 반사된 2건의 『皇華集』과 이후 1610년에 반사된 1건의 『皇華集』에서는 볼 수 없는 『承政院印』이다. 1608년의 간행본은 임란 후, 산일된 전적 수습정책의 일환으로 1450년부터 1582년분까지의 『皇華集』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간행·반사한 것으로 보인다.

<表 9> 內賜記 類型 圖式

(제1형) (內賜-受取者-書名-頒賜件)	(제3형) (受取者-內賜-書名-頒賜件)	(제4형) (內賜-書名-頒賜件-受取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恩 命 除 謝</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內 賜 奎 章 全 韻 一 件</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都 承 旨 臣 金 手</td> <td></td> <td></td> </tr> </table>	恩 命 除 謝	內 賜 奎 章 全 韻 一 件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恩 命 除 謝</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內 賜 嶺 議 奎 章 全 韻 一 件</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都 承 旨 臣 金 手</td> <td></td> <td></td> </tr> </table>	恩 命 除 謝	內 賜 嶺 議 奎 章 全 韻 一 件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恩 命 除 謝</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內 賜 嶺 議 政 洪 吉 童</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都 承 旨 臣 金 手</td> <td></td> <td></td> </tr> </table>	恩 命 除 謝	內 賜 嶺 議 政 洪 吉 童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恩 命 除 謝	內 賜 奎 章 全 韻 一 件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恩 命 除 謝	內 賜 嶺 議 奎 章 全 韻 一 件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恩 命 除 謝	內 賜 嶺 議 政 洪 吉 童	乾 隆 三 十 年 七 月 十 五 日																		
都 承 旨 臣 金 手																				

5. 結 論

이상에서 장서각 소장 내사본 중 120건을 대상으로 내사기를 작성한 기술 형식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사기는 형식과 체제로 보아 고문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사본은 고서와 고문서의 형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사기의 1행에 ‘頒賜日子’, 2행에 ‘內賜+受取者’, 3행에 ‘書名+頒賜件’, 4행에 ‘命除謝’, 5행에 ‘恩’, 6행에 ‘頒賜者’가 위치하는 사례가 가장 정형적인 기재 방식이었다.

둘째, 내사기는 7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1요소는 ‘頒賜日子’로 ‘頒賜年’과 ‘頒賜月’은 대부분 표기되어 있지만 ‘頒賜日’의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頒賜日’의 표기는 肅宗時期와 英祖時期에 가장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고 이전과 純祖時期부터는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제2요소는 ‘內賜’의 용어다. 이는 왕이 하사한다는 의미로 ‘內賜’외에 ‘頒賜’의 용어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제3요소는 ‘受取者(處)’로 개인과 관청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다소 달랐다. 개인은 ‘職銜+姓名’의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관청은 ‘官廳名’만 표기되었다. 제4요소는 ‘書名’이다. 일반적으로 本書名을 모두 쓰는 것이 관례였지만, 서명이 길 경우 축약하여 표기한 사례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제5요소는 ‘頒賜件’이다. 항상 서명 다음에 위치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변함이 없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冊, 秩, 帙 등 반사단위의 다양한 표기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件’으로 표기하는 공통된 방식을 유지하였다. 제6요소인 ‘命除謝恩’은 보통 개인의 내사본에 표기되는 요소이지만 일부 관청의 내사본에도 표기된 사례가 있었고 특히 ‘禮曹’에 반사한 서적의 표기 빈도가 높았다. 제7요소는 ‘頒賜者’로 ‘職銜+姓+手決’의 순서로 표기되었다. 서적의 반사자는 승정원과 규장각의 관원이 대부분이었고, 때에 따라 내시부, 홍문관, 시강원, 비서원 등의 관원이 서적을 반사한 사례도 나타났다.

셋째, 조사 대상본의 내사기 형식을 분석하여 사용 빈도가 높았던 3가지 작성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정형적으로 작성되었던 유형은 ‘頒賜日子’ → ‘內賜’ → ‘受取者’ → ‘書名’ → ‘頒賜件’ → ‘命除謝恩’ → ‘頒賜者’의 순서를 가진 작성 형식의 내사기였다. 이러한 형식을 가진 내사기는 전체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국왕이 신하나 중요 기관에 서적을 반사할 때 그 내력을 기재한 내사기에는 7가지의 정형적인 요소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내사본의 선본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실물자료

- 「朝鮮王朝實錄」.
- 「承政院日記」.
- 「奎章全韻」.
- 「弘文館志」.
- 「朱書百選」.
- 「离阮條例」.
- 「兩陵誌狀續編」.
- 「光國志慶錄」.
- 「園幸乙卯整理儀軌」.
- 「字恤典則」.
- 「六典條例」.
- 「挹翠軒遺稿」.
- 「漢艸」.
- 「御製樹德全編」.
- 「世孫册封儀便覽」.
- 「睿陵誌狀」.
- 「大學類義」.
- 「文臣講製節目」.
- 「國朝五禮儀」.
- 「奎章閣志」.
- 「御製永垂百世錄」.
- 「宮園儀」.
- 「欽恤典則」.
- 「三班禮式」.

- 「文苑黼黻」.
- 「文苑黼黻續編」.
- 「諭中外大小臣庶綸音」.
- 「小學」.
- 「大學諺解」.
- 「中庸諺解」.
- 「孟子諺解」.

2. 논문

-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도서관학연구지』 8 (숭의여전, 1983).
-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白 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國會圖書館, 1969).
6-8.
- 李殷澤.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도서관학논집』 2 (경북도서관학회, 1975).

3. 단행본

- 국민대학교박물관. 『오백년 전 관청 이야기』. 국민대학교박물관, 2005.
- 沈喁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 一志社, 1990.
-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文苑黼黻續編』. 同研究院, 2007.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同研究院, 1984.